

2016~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1	청담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3-2589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287번길 40-2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부정수령 등] - 청담유치원 설립자 000은 2007.2.1.부터 2015.5.30.까지 원주 단성어린이집 기타보육교직원으로 원주시에 신고 되어 있고, 2015. 6. 30.부터 2015. 9. 15.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며 동시에 2015. 3. 1.부터 감사일인 2016. 1. 14.까지 청담유치원 설립자 겸 사무직원으로 강릉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재직함 - 설립자 겸 사무직원 000은 단성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5. 7월 3백만원, 8월 5백만원, 9월 3,729,680원 등 어린이집에서 총 11,729,680원을 수령하고, 청담유치원에서 사무직원 급여로 2015.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7백만원씩 총 49,000,000원을 수령하여 영유아교육법상 전임 및 겸직급지의무 위반과 유아교육법상 상근의무를 위반하여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불라서 이중수령 하였음을 진술함 설립자 겸 사무직원 000과 000은 2015. 3. 1. 청담유치원 개원시 원장으로 000을 보고하였으나 실제 원장역할은 000이 담당하여 원장 000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000은 방과후 교사로서 2015. 3월부터 12월까지 처우개선비로 10개월 4백만원, 담임수당으로 2015. 12월분 49,670원 등 총 4,049,67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재정 : 000 기타(재정) 행정 : 청담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2	춘천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8416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24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춘천유치원에서는 2012년 2월 3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수가 5명인 경우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학부모 60/100 ~ 70/100, 교원 30/100 ~ 40/100)하여야 함에도 2012 ~ 2014년에는 교원 위원 3명, 학부모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였고, 2015년에는 위원 수가 6명으로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학부모위원을 선출이 아닌 지원을 받아 위촉하고, 학부모 위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모든 위원회에 모든 위원이 출석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모든 회의록에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는 등 실제 위원의 참석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2015.2.13. 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6명임에도 참석자를 9명으로 작성하고, 자문 안건 사항에 대하여 “모든 의결 사항은 학부모님께 공지하기로 함” 등과 같이 회의록에 기재함으로써 개별 안건사항에 대한 자문내용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회의록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위원회 자문사항인 유치원 급식,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안건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예산의 경우 예산대비 초과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회계를 부적합하게 마무리 하는 등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행정 : 춘천유치원 통보	수용	
3	춘천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8416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24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춘천유치원에서는 일새반(만4세반), 꽃잎반(만5세반) 2014년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생활기록부 2014.9.29.자 시행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개정된 유치원 생활기록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중 ‘유아의 생년월일’ 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학적사항 중 ‘출입 후의 상황’ 미기재, ‘수료 · 졸업대상번호’ 미기재, ‘가족상황’ 란에 부모의 생년월일을 일부 누락하는 등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행정 : 춘천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4	진영유치원 (2018.3.2. 폐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45-1966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1	[유치원회계 운영 부적정]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 진영유치원에서는 “진영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및 반품 내역”과 같이 2013. 3. 26 계약자인 부산시 남구 소재 “000미술포서” 000에게 교재교구 구입비 1,990,000원을 송금한 후, 주문내역과 다르게 납품된 교재교구를 반품하면서 반품물품 대금 1,038,000원을 유치원회계 계좌로 입금 받지 않고, 원장 000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보관하여 오다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4. 8. 27일에 유치원 회계 계좌로 1,038,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경고	수용	
5	진영유치원 (2018.3.2. 폐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45-1966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1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진영유치원에서는 교사 000, 000은 2012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3학년도 유치원 일부 원아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사 000은 2013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 란에 부모의 생년월일을 일부 미입력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주의	수용	
6	진영유치원 (2018.3.2. 폐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45-1966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5-1	[성범죄 예방 및 보호(성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적정]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진영유치원에서는 2013년도에 방과후 교사 000과 버스기사 000, 000을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로 000을 채용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행정 : 진영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7	원주세종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45-7278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30번길 5-25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세종유치원에서는 2013. 3월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2015. 9월 최초 구성을 하였으며,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에 대한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6.02.02.)까지 유치원 규칙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행정 : 원주세종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8	원주세종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45-7278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30번길 5-25	[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세종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별첨]과 같이 전체 원아 25명 중 “000” 및 6명만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학부모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19명은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수용	
9	성모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373-3005	강원도 영월군 금강공원길 33	[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성모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별첨]과 같이 전체 원아 53명 중 “000” 및 2명만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학부모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명은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수용	
10	상지유치원(폐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21-7679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059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상지유치원에서 교사 000, 000은 2014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교사 000은 2013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유아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고, 그 외에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유아발달상황, 기타사항을 미기재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주의 행정 : 상지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11	상지유치원 (2016.11.22. 폐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21-7679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059	[유치원 건강검진 관리 부적정]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상지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유치원 원장이 실시하는 대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유치원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원아 14명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12	대관령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336-5018	강원도 평창군 눈마늘2길 19-4	[유치원회계(차입·상환) 운영 부적정] 대관령유치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차입금)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년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의 사유로 차입하면 서 이사장이 관할청에 차입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원장 000에게 2012.3.26일 3,100,000원, 4.30일 1,000,000원 총 4,100,000원을 차입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한 후 2012.5.8일에 4,500,000원을 원장 000에게 상환하여 400,000원을 초과 상환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재징 : 대관령유치원 회수 행정 : 대관령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13	대관령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336-5018	강원도 평창군 눈마늘2길 19-4	[유치원 설립 운영(재산관리) 부적정]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사람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함에도, 대관령유치원은 원장 "000"이 1994. 1. 1. 개원하고 교사 및 교지를 2008. 11. 28. 시부 "000"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토지의 소유주체가 설립자 "000" 이어야 함에도, 대관령유치원 토지(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343-000) 244㎡를 "000" 지분 244분의 81, 배우자 "000" 지분 244분의 163으로 대관령유치원 토지 소유권을 공유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대관령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대관령유치원 통보	수용	
14	성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3-5674	강원도 강릉시 월대산로 45-1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 비치·보존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학교에서 비치할 장부와 서류로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지출의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및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성화유치원에서는 2012회계연도의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증빙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및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등 증빙서류를 보존기간 만료 전에 파괴하고 미·보존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15	산호유치원	강원도교육청	공립	033-637-0623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118번길 9	[속초 산호유치원 급식소 화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 건축물의 취급에 관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에 책임을 지며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호유치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매월 학교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 점검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6. 1. 6.(수) 04:05경 급식소 내부 칼·도마살균소독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200,000원 상당의 교육재산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	행정 : 산호유치원 통보	수용	
16	그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65-8773	강원도 원주시 종각길 13	[유치원규칙 개정 부적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림유치원에서는 2009. 10. 16.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정에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인 정원,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등 유치원 규칙 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그림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17	그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765-8773	강원도 원주시 종각길 13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 비치·보존 부적정] 그림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전혀 작성 및 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2011회계연도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미·보존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그림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18	가야유치원 (2018. 3. 7. 폐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73-3447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58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관리하되, 전산자료는 30년간 보관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가야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 10명, 2014학년도 14명, 2015학년도 8명 총 32명의 유아에 대한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행정 : 가야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19	가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73-3447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58	[유아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부적정] 「유아교육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정해진 시기에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나, 가야유치원에서는 2014년도 원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전체 원아 15명 중 만4세(캔디반) "000" 만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만3세(캔디반) "000" 외 2명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만3세(캔디반) "000" 외 10명은 영유아건강검진 및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모두 미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에 소홀이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20	가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73-3447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58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부적정]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교육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교육을 받아야한다. 가야유치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現 그랜드스타렉스 15인승, 차량번호 78서 0000)를 운영하면서 운영자 정기 안전교육을 2012. 5. 3. 받은 후 감사일 현재(2016. 3. 2.)까지 정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가야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21	가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73-3447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58	[유치원교사 근로계약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가야유치원에서는 교사 000과 2011.3.1.자로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감사일 현재(2016. 2. 3.)까지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가야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22	꿈나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41-9160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1348-20	[유치원회계 예·결산 및 보고 부적정] 강원도상척교육지원청 꿈나라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중 당초 세입예산 대비 수입액에 큰 증감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2013~2014회계연도에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액에 큰 폭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예산 및 결산서를 기간 내 미 제출에 따른 사유 보고 없이 2013~2015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수용	
23	꿈나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41-9160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1348-20	[유치원 교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 가입 부적정] 꿈나라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유치원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고, 의무가입 사항인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행정 : 꿈나라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24	꿈나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41-9160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1348-20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부적정] 꿈나라유치원에서는 2013. 1. 23.자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관리하되 전산자료는 30년간 보관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유아가 졸업한 이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학년도 9명, 2013학년도 7명, 2014학년도 9명 총 25명의 유아에 대한 유치원생활기록부를 각사실 현재(2016. 2. 19.)까지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경고	수용	
25	꿈나라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541-9160	강원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1348-20	[유치원회계 장부 작성 및 보관 부적정] 꿈나라유치원에서는 유치원회계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12~2013회계연도 징수부, 징수결의서, 수입일계표 등 세입관련 장부 및 증빙서, 지출결의서 등 지출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유치원회계 서류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신분 : 000 주의	수용	
26	마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433-1712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2길 7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제53조, 제53조의2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입학금 등 각종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유치원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교비회계 계좌에 예입하여야 함. 또한 수입에 관하여 징수대장 및 수입부 등을 작성하여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 마아유치원에서는 2014년~2015년까지 입학금 등 각종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징수하면서, ①수납부(월별행사내역; 000이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징수 관리하며 작성한 자료로 이사장 000이 감사 중에 제출)에 근거한 28,896,000원(특기교재비 21,360,000원, 불소풍비 2,776,000원, 여학생복비 2,480,000원, 가족운동회 2,280,000원)과 ②수납부가 없어서 감사기간 중 000이 구두 진술한 장어 원아수, 월징수액을 근거로 산출한 야간돌봄급식비 9,140,000원, 그리고 ③수납부도 없고 다른 확인 방법도 없어서 실제 비자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계산한 9,525,000원(입학금 7,620,000원, 교복비 400,000원, 기부행사 75,000원, 산타잔치 1,185,000원, 바자회 245,000원)를 합산한 총 47,561,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추정되나, 납부금의 항목별로 원아 개인별 납부 현황을 정리한 징수대장 및 수입부를 정상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아니하여 학부모부담 납부금의 실제 총 징수금액 및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금액 자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마아유치원 기관경고	수용	
27	마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433-1712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2길 7	[개인명의 계좌로 마아유치원 비자금 운용]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는 입학금 등 각종 학부모 부담 납부금을 유치원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마아유치원에서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제5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및 제59조에 따라 홍천교육지원청에 예·결산 보고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계좌(이하 '교비회계 계좌'라 한다)는 농협 351-0347-5743-00(예금주명: 마아유치원) 1개이며, 이외에 마아유치원 명의로 개설한 교비회계 계좌는 없음. 따라서 마아유치원에서는 입학금 등 모든 학부모부담 납부금과 교육청 지원금을 교비회계 계좌 1개로 관리 했어야 함에도 마아유치원 이사장 000은 본인 명의 계좌(농협 351-0693-7779-00, 개설일: 2014.3.19. 해지일: 2015.12.21., 예금주: 000, 이하 '비자금계좌'라 한다.)로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부담 납부금33,321,700원 및 교비회계에서 출금하여 편법으로 입금한 금액 17,610,360원, 원장 및 교사 보수 환수액 23,268,560원을 이사장 개인 자금과 함께 섞어서 운용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학부모부담 납부금 33,321,700원을 교비회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의2(벌칙)규정에 해당함. - 그리고 마아유치원에서는 2014~2015회계연도 중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유치원 유리청소비(2014.3.19.) 800,000원 등 15건 총 17,610,360원을 거래업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의 증빙서를 첨부하고 지출하면서 대금지급을 정당 채주가 아닌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사장 000은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33,321,700원 중 9건 21,500,000원만을 교비회계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재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부담 납부금 33,321,700원 중 일부이므로 당연히 별도 조건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치원에 마지자금을 대어해주는 것처럼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그 중 5건에 대해서는 실제 차용증까지 받았으며, 또한 1건 300만원은 비자금계좌로 다시 환수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마아유치원 기관경고 행정 : 마아유치원 수사의뢰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28	마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433-1712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2길 7	<p>[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비자금 계좌로 입금]</p> <p>「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및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6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모든 수입을 유치원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유치원이 받은 수업료, 기타 학부모부담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또한 같은 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르면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다른 회계관 당해 유치원 교비회계 이외의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2014도15182, 2005도3929)임</p> <p>- 그러나 마아유치원에서는 입학금 등 교비회계의 수입에 속하는 각종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전액 현금으로 47,561,000원 이상 징수하여 교비회계 계좌에 전혀 입금하지 않고 그 중 33,321,700원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규정한 「다른 회계」에 해당하는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비자금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4,239,300원은 현금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자금 계좌 33,321,700원 입금행위는 그 자체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로 판단됨.</p> <p>- 또한 이사장 000은 비자금계좌에 입금한 33,321,700원 중 9건 21,500,000원만을 교비회계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재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부담 납부금 33,321,700원 중 일부이므로 당연히 별도 조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치원에 마지자금을 대어해주는 것처럼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그 중 5건에 대해서는 실제 차용증까지 받았으며, 또한 1건 300만원은 비자금계좌로 다시 환수한 사실이 있음</p>	행정 : 마아유치원 수사의뢰 행정 : 마아유치원 통보	수용	
29	마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433-1712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2길 7	<p>[교비회계 자금 차입 부적정]</p> <p>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마아유치원에서는 차입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2014.2.25.~2015.12.30.까지 9건, 116,88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차용증, 교비회계 계좌 및 비자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48,3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p>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마아유치원 기관경고	수용	
30	마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433-1712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2길 7	<p>[교원 보수의 편취]</p> <p>000은 본인이 받은 보수에서 2014년 850만원, 2015년 1,080만원, 총 1,930만원을 비자금 계좌로 되돌려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조사결과 2014.3.25.~2015.11.27.까지 21회에 걸쳐서 1,940만원이 000의 계좌(356-0337-2413-00)에서 000의 비자금계좌(351-0693-7779-000)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음.</p> <p>- 000은 2015년 4월~6월까지 교사 000의 출산휴가 중 보수 390만원을 이사장 000이 비자금계좌로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결과 교비회계에서 교사 000에게 보수로 3회(2015.4.28., 2015.5.28., 2015.7.2.)에 걸쳐서 각 1,289,520원씩 총 3,868,560원이 지급되었고, 지급일 또는 익일에 이사장 000의 비자금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사장 000은 000에게 2016.1.15. 3,579,040원을 반환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감사기간 중에 제출한 바 있음</p> <p>- 교사 000은 이사장 000이 000의 출산휴가 중 1급 정교사 취득 조건으로 2015.12.1.부터 비일시에 출산휴가를 가고 보수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했으며, 2015년 10월~11월분 야간돌봄수당 월900,000원 2회 총 1,800,000원을 지급하고 9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결과 교비회계에서 교사 000에게 야간돌봄수당으로 2015.10.30. 1,080,000원, 2015.11.27. 900,000원이 지급되었고, 이사장 000이 확인서(2016.1.27.)에서 교사 000의 야간돌봄수당 9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사장 000은 000에게 2016.1.15. 900,000원을 반환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감사기간 중에 제출한 바 있음</p>	행정 : 마아유치원 수사의뢰	수용	
31	마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433-1712	강원도 홍천군 석화로2길 7	<p>[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의 부당 수령]</p> <p>마아유치원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 계획(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안내, 책임교육과-16140., 2014.8.5.)에 따라 정보공시에 학부모부담 납부금(입학금,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을 0원이라고 입력(2014년 10월, 입력자 000)하여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1,550만원을 2014.10.2. 지원 받은 사실이 있음.</p> <p>- 그러나 마아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는 입학금을 2014.9월부터 현금으로 징수(원아 1인당 10만원)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홍천교육지원청의 2015학년도 납입금 현황 조사(행정과-938, 2015.1.19.)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학부모부담 납부금을 '0원'이라고 제출(마아유치원-49, 2015.1.21.)한 사실이 있고, 또한 유치원에서 제출한 납부금 현황에 대하여 홍천교육지원청의 계획(행정과-2203, 2015.2.4.)에 따라 2015.2.12. 마아유치원을 점검할 때에도 자신들이 허위 제출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므로써 점검한 공무원이 '납입보고 변동없음, 최근 3년간 유치원비 변동 내역 해당없음, 유치원비가 인상된 경우 사유 및 책정 근거 해당없음' 이라고 작성한 점검표에 000이 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p> <p>- 홍천교육지원청에서 2015.6.17. 2015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도 학부모부담 납부금(특기교재비)을 징수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점검한 공무원이 세부점검 내용에 "특성화활동비 적정 산정 여부에 유아학비(학부모부담 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교육과정 유아학비지원금의 의미)에서 지원"한다고 작성한 점검표에 000이 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마아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지원금 1,5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있음</p>	신분 : 000 경고 재정 : 마아유치원 회수 행정 : 마아유치원 기관경고 행정 : 마아유치원 수사의뢰 행정 : 마아유치원 통보	수용	
32	수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교육청	공립(병설)	033-343-6127	강원도 횡성군 공근남로 446	<p>[포위유지 의무 위반]</p> <p>형의자는 손이나 나무재질의 투호재,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하여 유치원 원생들의 머리, 손바닥, 엉덩이, 어깨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항을 위반하여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벌금2,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포위 유지의 의무 위반' 에 해당함.</p>	신분 : 000 경징계	수용	
33	새봄유치원	강원도교육청	공립(단설)	033-241-987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13번 12	<p>[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p> <p>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새봄유치원에서는 2016회계연도에 '2016년 새봄유치원 조경공사'를 2016.6.15. 발주(기초금액: 11,000,000원)하여 2016.6.20. 강원도 춘천시 충훈길 48-1(문의동) 주식회사 00조경 000과 학교장터(S2B)에서 1인 수의 전자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0,960,000원)하여 2016.7.22. 준공, 2016.8.12.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계약체결 당시 징구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액서로 대체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p>	신분 : 000 주의 행정 : 새봄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34	만천초등학교병설 유치원(2017.3.1. 폐원)	강원도교육청	공립(병설)	033-251-776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26번길 89	[교육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000는 소속 교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수용	
35	내성초등학교병설 유치원	강원도교육청	공립(병설)	033-373-0662	강원도 영월군 내성안 길 9	[교육공무원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등] 교육공무원이 방과후행정사가 자신의 횡단을 하고 다니다며 행정사의 핸드폰을 가져가 녹음파일을 삭제하여 재물손괴죄로 검찰 투보된 사안	신분 : 000 경징계	수용	
36	솔향유치원	강원도교육청	공립(단설)	033-650-0900	강원도 강릉시 보래미 하길 78	[유치원 시설물 관리 부적정] 2017.1.3. 원아가 유치원 자동문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부분절상되었고 학부모가 원장 000 및 교사 000을 민형사상 고소한 사안이며, 원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사 000 및 원장 000가 벌금 3백만원 확정됨	신분 : 000 경징계	수용	
37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유아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현재까지 매년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한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전체 유아가 아닌 일부 유아들에 대해서만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2014년도 143명중 32명, 2015년도 153명중 39명, 2016년도 153명중 34명, 2017년도 152명중 20명 제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3년 보관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주에서 제출받은 일부 유아들의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만 3년 보관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38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현재까지 매년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한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전체 유아가 아닌 일부 유아들에 대해서만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2014년도 143명중 32명, 2015년도 153명중 39명, 2016년도 153명중 34명, 2017년도 152명중 20명 제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3년 보관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주에서 제출받은 일부 유아들의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만 3년 보관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행정 : 무궁화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39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2018.3.14. 현재 교직원들과 2018년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장에 대해서는 2014 년~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계약서에는 임금 및 유급휴가, 2017년 계약서에는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52시간에 해당하는 월 209시간(1월 10.5시간)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계약서에는 주당 40시간으로 명시하였으며 휴일(토요일) 근로 계약을 2016년, 2017년에 계속 체결한 사실이 있 으며 1월 8시간 초과 근무 및 토요일 휴일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금 및 초과근무당 또는 대체 휴무를 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무궁화유치원 임용계약서 제11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다' 고 명 시되어 있음에도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있음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행정 : 무궁화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40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유치원 원비산정 및 학부모부담금 집행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영어교육 교재비로 1인당 15,000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추가 발생하였음에도 원비 산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하여 납입금 1% 이내의 증가의 경우 지원받는 납입금 동결에 따른 보조금 14,760,000원을 지원받았 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영어교재비, 졸업앨범비, 우유비, 입학준비금)를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사하는 2018년도 납입금 징수 현황에 누락하여 원비 인상액을 산정하였으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인 방과후교재비(특성화활동-영어교육), 졸업앨범비, 우유 대금 등을 유치원회계에서 징수·수납하여 업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학부모에게 관련업체로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 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무궁화유치원 통보	수용	
41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원장 000 외 5명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르지 않고 증빙서류 없이 973,180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원장 000의 원장자격연수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장비 전액을 지원했음에도 유치원회계 에서 이종으로 1,000,000원을 지급함. 또한 여러명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여 개인별 지급액과 수령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명절휴가비 및 하계휴가비 104,600,000원 역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령인 확인(서명)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재정 : 무궁화유치원 회수 행정 : 무궁화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무궁화유치원 통보	수용	
42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신입생 입학금 및 재학생 입학준비금 징수·수납 처리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2015회계년도부터 2018회계년도까지 신입생 입학금에 대하여 유치원장 원아 유치가 치열하여 원아를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재학생 입학준비금은 이전년도 11월부터 징수하면서 회계연도가 달라 관리가 편리하다 는 이유로 현금으로 수납 받는 등 총 41,670,000원을 무단으로 보관하다 매년 3월 학기가 시작되자 유치원회계 계좌로 일괄 입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수용	
43	무궁화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6-2567	강원도 춘천시 미나리 길 11번길 11	[정보공시(유치원알리미) 업무 처리 부적정] 춘천 무궁화유치원에서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예산서 및 결산서와 상이한(산출기초 누락) 자료를 총 5회(2015년 2차, 2016년 1차 및 2차, 2017년 1차 및 2차)에 걸쳐 정보공시(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였고 학부모부담경비인 입학준비금 등을 공개하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44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3월 23일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이 원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여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2014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2015 학년도에는 원아 112명 중 82명, 2017학년도에는 원아 97명 중 57명만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 시 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45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3월 23일 현재까지 소속 교직원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한 사실이 없고, 소속 교직 원의 휴가, 지장, 조퇴, 외출, 근무내 출장,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근무상황부에는 2014년~2018년 현재까지 총 3건(000 5일 병가 1건, 000 2시간 30분 출장 1건, 000 7시간 30분 출장 1건)의 근무상황부 기재되어 있어 기관의 관 리자인 원장(원장은 없음)은 교직원외 방학 중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연가, 공가, 조퇴, 외출, 출장 등을 근무상황부에 기재 또는 사전결재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행정 : 청송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46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6년에 교사 000, 000와 2017년에 교사 000, 000에 대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08:00-18:00까지 평일 10시간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교사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1주 간 7.5시간(1월 32.55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체결하였는데 연장근무의 경우 동법 제56조, 57조에 의거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명 명시되지 않은 채 1주 간 7.5시간(1월 32.55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이 통상임금(계약서에 통상임금 7,721원 명시)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100분의 50 가산 임금이 못 미치는 금액을 월정액(000-월13,770원; 000, 000-월16,230원; 000-월36,230원; 000, 000, 000-월5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설립자 겸 교사 000 외 8명의 교직원에 대한 2015년 및 2017년 근로계약서 등을 보존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수용	
47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교직원 임명 및 임무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8년 3월 1일자로 원장이 의원면직을 한 이후 2018년 3월 23일 현재까지 원장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송 유치원의 설립자 겸 교사로 임명 보고된 000를 2018년 3월 6일 원장직무대행자로 지명 보고하였고 "유아교육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5학급 유치원으로서 원장을 두어야 하나 2007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원장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2018년 3월 2일- 23일 현재까지 관할청에 교원으로 임명 보고된 000(설립자)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의거 교직원의 임무로서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해야 함에도 원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되어 교원 및 방과후과정 인사 관리, 식단관리, 교사연수계획 및 연수 관리의 행정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를 교육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행정 : 청송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48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운동장 및 텃밭 사용료 지급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강원도 두산동 000번지(대지, 총 1,933㎡) 및 강릉시 두산동 000번지(전, 총 1,017㎡)가 설립자 겸 교사 000의 소유이지만 2007년 설립당시 청송유치원 교지로는 인가받지 아니한 토지라는 이유로(2009년 매입), 설립당시 인가받은 체육장(503.5㎡)이 있음에도 추가로 필요한 체육장과 실습지의 중용사항에 대한 변경인가 없이 2014회계부터 2016회계까지 유아 교육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각각 '운동장' 과 '자연아 놀자 텃밭' 으로 사용하면서 설립자 겸 교사 000의 계좌(농협 352-0680-0458-000, 2016.6.2.부터는 농협 352-1125-3432-000)로 총 32,4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재정 : 청송유치원 회수 행정 : 청송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49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원장 000이 자신의 명의로 "00교육원"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인 '이얼스스작공' 과 '베베파카부' 강좌에 대하여 계약 체결없이 2017. 3월부터 2017. 5월까지 15,60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특히 2017.6.22.자로 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7.1.자로 5,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농협 351-0936-3946-00[예금주: 000(00교육원)]으로 총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4회계부터 2017회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4.3.14. 집행한 상상이엔디 외 89건 247,231,820원에 대하여 이체(송금)확인서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다가 2018.3.23. 감사일에 66건(24건은 계좌변경 이전의 거래사항으로 제출 불가)을 일괄 제출하였고, 2017.7.7. 집행한 도장공사 외 2건 6,880,000원의 소규모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사 사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실제 공사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품의, 계약, 집행에 있어 품의와 지출내역에 'G-국민은행 상상이엔디' 와 같이 사업의 내용이 아닌 '거래방법 및 업체명' 만 기재를 하여 일부 견적서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세부내용을 알수가 없도록 하였고, 또한, 2014.3.14. 집행한 상상이엔디 외 84건의 지출은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는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는 48건만 징구하였으 며, 일부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만 첨부하였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행정 : 청송유치원 통보	수용	
50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수익자경비 징수·수납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 12월부터 2015. 4월까지의 미수납된 입학금, 교육비, 방과후교육비, 특기적성비 등의 수익자경비 19,950,000원에 대하여 미수납자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2015. 3월부터 2015. 8. 9.까지 설립자 겸 교사 000가 학부모에게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아 두어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2015. 8. 10. 일괄 유치원회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수용	
51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2014. 6. 2.부터 2017. 5. 13.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7회 3,015,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재정 : 청송유치원 회수 행정 : 청송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52	청송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652-7701	강원도 강릉시 성덕로 232-11	[예·결산 업무 처리 부적정] 강릉 청송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서 최장 5일이 초과하여 제출하였고 운영위원회 자문은 38일에서 최장 78일이 초과하여 사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동안 2014년도 세입, 세출 각각 42,411,000원, 24,330,000원, 2015년도 세입, 세출 각각 15,278,000원, 13,286,000원, 2016년 세입, 세출 각각 63,312,000원, 63,053,000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수용	
53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유아 생활기록부 보관 및 관리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2014년 ~2017년 기간동안 생활기록부를 업무포탈의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생활기록부를 붙임문서로 첨부하여 기안 결재를 하지 않아 원아의 생활기록부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54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2015년~2018년 4월 13일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이 원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여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2015학년도에는 원아 160명 중 47명, 2016학년도에는 원아 161명 중 80명, 2017학년도에는 원아 156명 중 73명만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55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금 징수·수납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2014회계년도부터 2018회계년도까지 매년 11월 25일을 전후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면서 당일 입학금을 준비하라고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고, 원아모집에 유리하고 회계가 겹친다는 이유로 총 285명 57,000,000원의 입학금을 규정보다 45일 이르게 현금으로 징수 및 수납하고, 2014회계년도부터 2015회계년도까지 재학생의 입학금(진급비)에 대하여는 2월에 회계가 겹친다는 이유로 총 198명 13,860,000원을 현금으로 징수 및 수납하는 등 총 483명 70,860,000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금을 이전해 11월 내지 당해 2월에 현금으로 징수 및 수납하여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이듬해 새학기가 시작되면 3월 내지 4월에 일괄 유치원회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수용	
56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2014회계부터 2017회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4.7.7. 집행한 샌드아트 공연 관료료 외 18건 38,675,310원에 대하여 품의서가 누락되었고, 2014.3.18. 집행한 원아수첩 구입 외 14건 23,437,400원에 대하여 견적서나 거래명세서가 없어 총 금액만 보면 어떤 사업을 집행하였는지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으며, 2014.4.17. 집행한 어린이날행사 원아 선물 구입 외 8건 13,282,400원은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금이체 결과서만 첨부함으로써 어느 업체와 거래하였는지 알 수가 없도록 함. 또한 2014.3.18. 집행한 원아수첩 구입 외 45건 73,896,210원은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는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 징구가 누락되었으며, 2014.3.18. 집행한 원아수첩 구입 외 66건 613,284,26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행정 : 삼운사유치원 통보	수용	
57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2015회계년도부터 2017회계년도까지 3년간 총 36회 걸쳐 공적이용료 명목(2017회계년도엔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126,24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5회계에는 매달 4,000,000원, 2016회계에는 매달 4,500,000원을 IBK기업은행 126-091298-15-000(삼운사유치원)의 계좌로 지급 및 적립하다가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의 이유로 2017.12.15. 104,023,257원(원금 102,000,000원, 이자 2,023,257원)을 유치원회계로 환입하였고, 2017회계에는 매달 2,020,000원을 IBK기업은행 126-091298-15-000(삼운사유치원) 계좌로 총 24,240,000원을 지급하여 적립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회계년도부터 2017회계년도까지 4년간 총 82회에 걸쳐 시설보수 및 통원차량 구입 명목으로 적립금 248,500,000을 적립하면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통원차량 구입 명목으로 2015.2.27. 중소기업은행 126-091298-21-000(삼운사유치원) 계좌에 적립하였던 100,000,000원은 2017.7.26. 원아강사로 인한 차량구입 추후 경도 및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의 이유로 임의의 적립용도를 변경하여 적립이자 3,645,831원을 포함한 103,645,831원을 유치원회계로 편입시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재정 : 삼운사유치원 회수 행정 : 삼운사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삼운사유치원 통보	수용	
58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2014. 4. 17.부터 2017. 4. 19.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5회 3,96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재정 : 삼운사유치원 회수 행정 : 삼운사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59	삼운사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57-623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12	[시설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춘천 삼운사유치원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4~2017회계) 동안 총 4건(약 5억원)의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 인지세 미징구, 계약보증금 미징구, 검사조서 미작성, 일반경쟁 미실시, 전기공사 분리 발주 미실시 및 공사대금 일부 착공일 이전에 무단 선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수용	
60	무실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공립(단설)	033-738-4700	강원도 원주시 지니기 길 11-18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000는 2017. 11. 5.(일) 17:22경부터 2018. 1. 11.(목) 06:21경까지 19회에 걸쳐 공중전화로 000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불만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발하게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춘천지검으로부터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신분 : 000 경징계	수용	
61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유아 생활기록부 보관 및 관리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를 업무포털의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생활기록부를 돌입문서로 첨부하여 기안 경계를 하지 않아 원아의 생활기록부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62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4년~2017년까지 유치원 원장이 원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여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2014학년도에는 원아 200명 중 23명, 2015학년도에는 원아 251명 중 21명, 2016학년도에는 원아 363명 중 14명, 2017학년도에는 원아 280명 중 23명만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확인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수용	
63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6년에 교사 000와 2017년에 교사 000와 000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근거서류인 근무상황부가 부존재하며, 방학 중 유급휴가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야 함에도 복무관리인 원장은 2014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교원들이 근무상황부 기재 또는 사전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휴가, 조퇴, 출장을 한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한 2015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휴가를 이용한 국외여행에 대해서 교사 000 3회, 000 1회, 000 2회, 000 1회, 000 1회에 대해서 근무상황부 기재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64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8년도 교사 000외 14명에 대하여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가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573,770원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8년도 교사 000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1주 간 5.875시간(1월 25.5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체결하였는데 연장근무의 경우 동법 제56조, 57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가 명시되지 않은 채 통상시급(7,530원)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100분의 50에 못미치는 가산임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수용	
65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교직원 임무 및 임명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13학급 유치원임에도 2014년-2018년 현재까지 원감을 임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1조에 의거 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임무가 다른에도 관할청에 유치원 교사로 임명되고된 000가 2018년 5월 11일 현재 예초유치원 홈페이지에는 원감으로, 고시된 유치원 알리미에는 대표로 명시되어 있고, 2014년-2018년 현재까지 급여대장에는 원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로 임명되고된 000는 2018년 5월 11일 현재 유치원 홈페이지에 원감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직원의 직위 구분이 상이하게 이용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66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세출예산 집행과 계약 업무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4회계부터 2018회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168건 530,614,910원에 대하여 이체(송금)확인서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인라인공사 및 지붕보수공사로 8,600,000원의 소규모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사 사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실제 공사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계약 및 집행에 있어 지출결의서 내역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영재문구’, ‘유아산업’, ‘보육사’ 등과 같이 거래업체명 기재를 하여 일부 거래업체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하였고, 2014.3.7. 집행한 인라인공사 외 41건 71,281,240원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만 작성하고 일체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거래처, 사업자유형, 이체결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리고, 2014.3.4. 집행한 동심교재 외 92건 288,338,310의 지출은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는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제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시설공사에 있어 2016.9.21. 옥상방수공사(지출결의서 적요란: 000포인트)(등록번호: 000-11-17990, 주소: 의정부시 가농2동 000, 대표: 000, 업태: 소매, 종목: 페인트)로부터 17,650,000원의 공사견적서를 징구하고 2016.10.10.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업체는 2005.6.29.자 폐업한 업체인 바, 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방수공사 전문면허업체와 시행하여야 하나 전문공사인 면허없이 자 폐업한 업체와 연계한 거래함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예초유치원 회수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예초유치원 통보	수용	
67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및 수납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한 수업료와 입학금 등 수익자부담경비 총 1,666,555,000원을 유치원 교비 계좌로 즉시 입금하고 유치원 회계로 징수 및 수납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CMS계좌(301-0104-3502-00, 예금주: 예초유치원)로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유치원회계 통장에 즉시 입금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매월 수입이 발생한 당일(정기 인출일: 매달 25일)이 아닌 불특정일에 유치원회계로 이체하였고, 2018.5.11. 감사일 현재 2018.4.10.부터 2018.5.8. 까지 납입된 수익자부담경비 43,206,750원을 유치원회계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최장 30일 보관하여 온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68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과 적립금 운용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5회계연도 3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적시설이용료 목적으로 유치원회계에서 23,000,000원을 별도계좌로 지급하여 적립하다가 해지하여 2018.5.8.자로 이자를 포함한 23,608,974원을 2019.6.8.을 만기로 하여 농협은행 353-0048-8578-00(예금주: 예초유치원) 계좌에 정기예탁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4회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총 10회 걸쳐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향후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비 부족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시설적립금과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313,524,081원을 적립하면서 8개의 계좌로 각각 따로 예치하다가 기간만료가 되면 이자를 포함하여 농협은행 353-0047-6707-00(예금주: 예초유치원)의 7개 계좌에 재예치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2016.2월 지급한 시설적립금 36,000,000원과 퇴직적립금 28,000,000원을 하나의 계좌에 함께 적립하고 2017.2월 지급한 시설적립금 62,500,000원과 퇴직적립금 67,500,000원 역시 하나의 계좌에 적립함으로써 두가지 목적에 대한 적립금을 혼용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퇴직적립금의 목적으로 143,500,000원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2015.7.23.부터 2018.3.6.까지 교사 000외 7명의 퇴직금을 적립금이 아닌 유치원회계에서 25,554,3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예초유치원 회수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예초유치원 통보	수용	
69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4.03.14.부터 2017.04.04.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7회 금 4,77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행정 : 예초유치원 회수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70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예·결산 업무 처리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료를 원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산서를 관할청에 제출을 아니하거나 2일에서 최장 75일을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83일을 지연하여 사후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개년 동안 2014년도 세입, 77,666,000원, 2015년도 세입 102,733,000원, 2016년도 세입 55,718,000원, 2017년도 세입 311,936,000원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예산서 및 결산서와 상이한 자료(산출기초 누락 등)를 총 5회(2016년 1차 및 2차, 2017년 1차 및 2차, 2018년 1차)에 걸쳐 정보공시(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신분 : 000 주의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71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통학차량 운영 및 설립자 개인차량 주유비 집행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지입차량과 계약(2014학년도 2대, 2015학년도 1대, 2016학년도 1대, 2017학년도 1대)하면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서 등 계약 관련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그랜드스타렉스(71고0000)의 경우, 설립자 겸 교사인 000가 공동소유자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였음에도 운전원인 000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으며, 차량 계약자인 000, 000에게 2014.3월부터 2018.2월까지 월 임차료로 총 77회에 걸쳐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일부 교직원에게 '차량식대', '차량유지비', '교통/식대보조', '교통비' 등 명목으로 교통비 관련 수당을 2014.3월부터 2018.4월까지 매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씩 지급하였음에도(총 지급액 78,395,000원), 2014.03.11.부터 2018.05.11.(감사일 현재)까지 설립자 및 교사 000의 개인 차량(올란도 2.0 LPG, 43도0000)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춘천 외 서울, 경기도 등 타지역에서도 차량 연료(LPG)를 주유하는 등 총 186회에 걸쳐 6,463,924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무단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재정 : 예초유치원 회수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72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교직원 비과세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법령에서 비과세 연구수당 지급 대상은 유치원 교원이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법령 등에 근거 없이 교원이 아닌 직원(행정실장 000 외 6명)에 대하여 비과세 연구수당을 2016.3월부터 2018.4월까지 총 27,011,000원을 지급하는 등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행정 : 예초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73	예초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4-2800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9번길 38-12	[무인기 체육장(인라인스케이팅장)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춘천 예초유치원에서는 육상을 포함한 고층에는 체육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8.05.11.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용 시설로 인가 받지 않은 인라인스케이팅장을 육상(5층)에 무단으로 설치(2014년 추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수용	
74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2014년~2018년 현재까지 매년 건강검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보훈자가 별도로 실시한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대해서도 전체 유아가 아닌 일부 유아들에 대해서만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3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학년도에는 원아 123명 중 80명, 2015학년도에는 원아 130명 중 98명, 2016학년도에는 원아 159명 중 141명, 2017학년도에는 원아 131명 중 93명만 검사 결과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는 등 원아의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통보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수용	
75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소속 교원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근무지내 출장,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4년에 교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근거서류인 근무상황부가 부존재하며 2015년부터의 근무상황부에는 조퇴, 외출, 출장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결재를 득하였으나 연가에 대해서는 원장 000만 기재가 되어있으며 나머지 교원의 연가는 기재 또는 사전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연가를 사용하여 교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연가를 이용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원장 000은 5회(2014.12.03.-2014.12.06., 2015.01.25.-2015.01.29., 2015.02.03.-2015.02.10., 2016.12.06.-2016.12.12., 2017.10.02.-2017.10.06.) 원강은 3회(2015.09.30.-2015.10.06., 2017.10.02.-2017.10.06., 2017.12.23.-2017.12.31.)에 대해서 근무상황부 기재 및 사전 결재 없이 실시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수용	
76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교직원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현재 원장인 000이 2016.01.01.부터 2018.03.31.까지 원강으로 직책을 변경하였고 같은 기간에 현재 원강인 000가 직책을 원장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그 후 2018.04.01.부터 다시 직책을 서로 바꾸었음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 2018.05.25.부터 현재까지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설립자 000에게 2014.03.10.부터 2018.02.28.까지 채용 계약 없이 급여(124,691,480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강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77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p>[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p> <p>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p> <p>①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2014년 ~ 2017학년도까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2018학년도 1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만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인건에 대해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운영위원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위원에 영양사 000을 2016년부터 교원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p> <p>② 또한 해마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의견을 수령하여 프로그램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 ~ 2018학년도까지 학부모 의견 수령을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이 선정 되었다는 운영위원회 관련 협의록 등 근거 자료가 없음.</p> <p>③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2017년과 2018년은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임대기관(0000에듀)에 위탁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에는 수업 강사(4명)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사 1일째(2018.5.23.) 요청하였으나 2014년~2016년까지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계약서 및 강사 관련 서류가 부존재하다고 하였으나 강사 3일째(2018.5.25.) 강사 계약서와 관련 서류(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모든 계약서에는 2018.3.2. 당시 원장인 000가 아니라 원감으로 임용보고 된 이 원장 직책으로 해당업체 및 해당 강사들과 계약한 서류를 제시함.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매월 납부 금액(“000 영어” 75,000원, “000(English Class)” 35,000원)이 유아 1인당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업시간은 30분임에도 수업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강사의 근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수업일지 등 수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방과후 특성화 강사에 대해 소홀히 관리 감독한 사실이 있으며 2018년도 0000에듀와 은빛유치원이 체결한 특성화 수업 계약서에는 3조(수업 개시 후 유치원 사정에 의하여 수업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충수업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강사의 예비교 훈련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와 5조(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정당한 이유없이 강의의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당사를 해할 수 있으며 물적 정신적 보상에 대해 책임진다. 단, 강의 태도가 불량하고 여러가지나 기타사항에 의해 해임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의 경우 업체의 사정에 대해서조차 보충수업 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p> <p>④ 특성화 프로그램 “000 영어” 주 4일(월 16회), “000(English Class)” 주 1일(월 4회)로 만3세는 매주 수요일, 만4세는 매주 목요일, 만5세는 화, 수, 목 중 1일에 대해서 “000 영어”, “000(English Class)”를 연이어 실시하여 “유아 1인당 1일 1개 프로그램을 1시간 이내” 실시해야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편칙을 어겼으며 “1일 2개”의 영어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어 몰입 수업을 한 바 있음.</p> <p>⑤ 특성화 활동비 “000 영어” 75,000원, “000(English Class)” 35,000원에 대해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학원 계좌로 학부모가 별도 수납(2018년 4월까지)하도록 하여 유치원 세입에 미편성하였다가 2018년 5월부터 다시 유치원 세입에 편성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p> <p>⑥ 유치원이 아닌 사교육 기관인 건물내 3층의 0000에듀로 이동하여 방과후 과정시간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위탁 강사에 의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2017-영어, 오르다, 음악, 미술, 2018-영어, 오르다)을 운영하여 방과후 과정 원아 관리에 소홀히 한 바 있음.</p> <p>⑦ 강사비는 “000 영어”, “000(English Class)” 모두 일대일 개인지도가 아닌 그룹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시간(회차)당 단가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원아 1인당 강사비로 과도하게 책정- “000 영어” (유아 1인당 강사료 월 50,000원×99명)/월16회= 1회당 강사비 309,375원, 교재비 월25,000원 별도, “000(English Class)” (유아 1인당 강사비 월 35,000원×98명)/월4회= 1회당 강사비 857,500원-한 사실이 있고, 2014-2017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산출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한 1회당 강사비 30,000원-35,000원과 2018년 춘천시 사립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학부모 부담금 평균 30,739원(춘천교육지원청 제출 자료)에 비해 은빛유치원이 110,000원으로 최고 금액이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유치원 방과후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하게 과도한 특성화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다.</p> <p>⑧ 교육과정 시간에는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강사 000을 채용하여 매주 화(만3세), 수(만4세), 목(만5세)(주 1회, 월 4회)에 1일 2시간씩 춘천 숲체험장에서 생태미술을 지도하게 하여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p>	<p>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p>	수용	
78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p>[공유재산 대부위 공사계약 집행 부적정]</p> <p>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2016.12.23.자로 (구)오안초 000분교장(춘천군 흥천읍 000리 000-1번지 등 3필지, 2개동의 건물)에 대하여 사용목적은 ‘교육용시설(유아 숲교육)’으로 하고 2017.1.1.~2021.12.31.(5년)간 강원도흥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대부계약(연간 임대료 570,900원)을 체결하고 사용하면서 2017.5.11. 흥천000분교 환경개선공사로 0000건축(사업자번호: 000-13-60182, 주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000, 대표자: 000)과 22,902,000원에 공사 계약을 실시하고 옥상레미콘, 현관 및 후문 데크, 화장실 타일 및 양반기, 교실 마루바닥 수리, 실내외 페인트, 관사 방화문 공사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강원도 흥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은빛유치원의 특색교육(숲체험)에 대하여 연영별 주1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교육환경을 위하여 실습지로 인가되지 아니한 강원도교육감 소유의 시설물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또한 위 업체는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공사를 실시하였고, 인지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은빛유치원에서는 2017.5.11.자 공사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정당채주가 아닌 000(농협356-0081-2062-00, 000이, 본인외. 처. 계좌로. 입금요청하였다고 소명함)에게 정당한 계약상대자가 아닌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p>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무	진행현황
79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p>[세출예산 집행 부적정]</p> <p>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2014회계부터 2018회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2014회계부터 2017회계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는 2014. 10.30.부터 2016.2.2. 까지 유치원 교직원 이 아닌 자의 경조사와 잔조 등의 목적으로 총6회에 걸쳐 69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24. 교직원 000의 동생 사망에 따른 조의금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100,000원(2017년 기준)보다 200,000원 을 초과하여 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890,000원을 초과 또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014. 3. 25. 집행한 다문화교육활동비 외 40건 92,660,000원에 대하여 이체(송금)확인서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25. 마담탄성공사 18,900,000원 외 8건 72,500,000원에 대하여 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 사 사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실제 공사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계약 및 집행에 있어 지출결의서 내역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장청근-덕트공사’, ‘플레이징’ 등과 같이 거래업체명만 기재하여 일부 거래명세표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 도록 하였고, 2014. 3. 25. 집행한 다문화교육활동비 외 23건 55,700,160원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만 작성하고 일체의 증빙서류가 첨 부되지 아니하여 거래처, 사업자유형, 이체결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음. 그리고, 2015. 3. 31. 집행한 미술퍼포먼스 외 26건 71,009,468원의 지출은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는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징구 하지 아니하였고, 매일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다. 폐업업체 거래에 관한 사항 2015. 3. 25. 마담탄성공사에 대하여 ㈜000(등록번호: 000-86-35790, 주소: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000, 대표: 000, 업 태: 제조업, 종속: 놀이시설물)로부터 43,850,000원의 공사견적서를 징구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업체는 2015. 1. 26. 자 폐업 한 업체인 바, 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전문면허업체와 시행하여야 하나 전문공사업 무면허이자 폐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19. ~2016. 4. 22. 까지 아공이공사, 전기청소방충망 원수리, 방수공사 등에 대하여 00하우스(등록번호: 000-10-57939, 주소: 춘천시 효석로 77번길 00번지, 대표: 000, 업태: 건설업, 종속: 인테리어/방수)를 상대로 4건 18,263,800 원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업체 역시 거래 이전인 2015. 7. 31. 자로 폐업을 하여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 및 공사대금을 집 행한 사실이 있음. 라. 정당한지 아니한 자에게 대금 지급 2016. 3. 11. 원수리공사 4,023,800원 및 2016. 4. 22. 방수공사 8,840,000원은 00하우스 000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 가 아닌 000(농협3510256876000 000)에게 지급하고, 2016. 8. 5. 아동의류 구입 3,150,000원은 00아이와 거래하였음에도 긴급하 게 송금하여야 하나 유치원 사장이 여의치 않았다는 이유로 000[은빛유치원 3층 임대자 0000000000]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000에게 유치원회계에서 대금을 송금하고, 2017. 2. 7. ㈜000 000과 거래한 포토북 1,064,160원, 2017. 11. 30. 일송아트홀 대여료 1,518,000원 역시 같은 이유, 같은 방식으로 000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 마.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2014. 3. 25. ~2015. 1. 31. 까지 다문화 활동비로 월 2,400,000원, 연간 19,2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강사계약을 보유하지 아니 하였고,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3. 1. ~2017. 2. 28. , 2018. 3. 1. ~2019. 2. 28. 까지 미술수업에 대하여 000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5. 강사일 현재까 지 월 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p>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 재정 : 은빛유치원 회수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은빛유치원 통보</p>	수용	
80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p>[수익자부담경비 징수 및 수납 부적정]</p> <p>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일차미상에 입학금을 현금으로 받아 두고 무단으로 보관하다가 3월 학기 시작전후 일정금액을 유치원회계로 입금(계좌 기록내용: 인터넷, 입학금 10명의 방식) 하였고,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입학생은 학부모가 유치원계좌로 입학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였으나 학기가 시작되기 50 일 전부터 징수하여야 함에도 원아모집시기인 전년도 11월경부터 수납(2017학년도 2016. 11. 28. 부터, 2018학년도 2017. 11. 7. 부터 수납 시작)하는 등 법정기준일로부터 최장 64일 이전에 징수한 사실이 있으며, 학부모가 납부하는 모든 금액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연도별 은빛유치원 생 활안내문을 보면 현장학습비, 캠프비, 앨범·스낵사건비는 일회성경비라고 안내하고, 매 학년도마다 일회성 경비에 대해 학부모 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통의서를 징구하고 운영위원회 자문과 예산편성 절차를 누락하는 한편, 정당업체를 선정하여 유치원과 업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회계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학부모가 앨범비(2014~2017년 5,6세 110,000원, 7세 150,000원), 우유비(2017~2018년 78,880원~80,900원), 원복 및 체육복비(2018년 원복 243,000원, 체육복 87,000원) 등을 개인별로 관련업체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음.</p>	<p>신분 : 000 경고 신분 : 000 경고</p>	수용	

연번	유치원명	감사기관	설립유형	전화번호	주소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수용 유유	진행현황
81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급과 차임금·적립금 운용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2016.2.28.자 확정된 2016학년도 본예산에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목적으로 3,500,000원*12회 =42,000,000원'의 적립금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얼마미상에 운영위원회 자문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관할청 제 출: 2017.4.19.) 사업별로 '경정-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명을 '시설사업적립금'으로 변경하였으나 적립금 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예산 지출시 '공적이용료' 등의 목적으로 설립자 000의 계좌(농협은 행 352-1107-2692-00와 3개 계좌)로 7회에 걸쳐 24,500,000원을 지급함. 2017회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추경을 실시하였고 회계연도가 경과한 2018.3.14. 운영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11회에 걸 쳐 공적이용료 목적으로 29,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유치원 운영비 부족의 이유로 해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면서도 유치원회 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2년간 총 18회에 걸쳐 53,4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6.3.31.부터 2017.6.30.까지 총 11회에 걸쳐 11,800,000원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면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그리고, 2014회계연도에 2014.11.25.부터 2015.2.28.까지 3회에 걸쳐 '원운영비부족단기차임금'으로 설립자 반복동으로부터 21,000,000원을 차입하고, 2015회계연도에도 2015.5.28.부터 2015.6.4까지 '원운영비부족단기차임금'으로 설립자 반복동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임시차임금의 경우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그 다음연도인 2016.3.31.~2017.1.26.에 2014 년도 차임금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2017회계연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도 없이 2017.10.31.에 30,000,000원, 2017.11.30.에 20,000,000 원 등 총 50,000,000원을 설립자 반복동으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지난 2018.3.14. 운영위 원회에 자문을 받고 2018.5.23.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차임금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재정 : 은빛유치원 회수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행정 : 은빛유치원 통보	수용	
82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등 납부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2014.03.31.부터 2017.03.30.까지 임의단체인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총 4회 2,850,000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재정 : 은빛유치원 회수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83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교육용 기본재산 변경 인가 및 임대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인가받은 유치원 건물 3층을 관할청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건축물대장만 학원으로 변경(2011.02.07.)하였으며, 2016.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설립자 000이 학원 운영자(000에유 000)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70만원의 임대료를 수 령하면서, 3층 학원에서 사용되는 전기, 수도 등 각종 공과금 일체를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84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교직원 사학연금 대여 상환금 납부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사학연금 납부 시 원장 000의 개인별 사학연금 대여 상환금을 해당 교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 치원 교비에서 총 26,72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경고 신문 : 000 경고 재정 : 은빛유치원 회수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85	은빛유치원	강원도교육청	사립	033-262-8022	강원도 춘천시 거두택 지길 47	[업무차량 관련 지출 및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적정] 춘천 은빛유치원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운행 시 정당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장명령기록(근무 상황일지),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 업무용 사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나 관련 자료를 일체 구비하지 않 아 업무용으로 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만35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도록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모든 교직원이 사 용할 수 없음에도 업무용이라는 명목으로 썬타페(61오0000) 차량의 자동차세를 총 3회에 걸쳐 752,09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 하였고,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체하여 12,100원의 가산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원장 000 개인 소유인 카니발(73라000)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도 3회에 걸쳐 103,990원을 납부하 는 등 총 866,26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신문 : 000 주의 신문 : 000 주의 재정 : 은빛유치원 회수 행정 : 은빛유치원 시정(행정)	수용	